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21 호 2020. 3. 5.(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44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46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279호[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예산) 공고].....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283호[소하천 점용허가 공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287호[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289호[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297호[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298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22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20. 2. 28.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방법용 CCTV POLE)
3. 점용·사용의 장소 : 중산동 1178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일시 9㎡, 영구 1㎡
 - 나. 기 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50일
 - 영구 : ~ 2034.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주민소통실)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4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32-8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3.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32-8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20길 1	2020-03-05	당수나무가있는당수골 명칭사용하여서도로명 을부여함.	2017-05-04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04-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4 로 45	2020-03-05	호계·매곡지구명칭사 용을사용하여서도로명 을부여함.	2017-05-04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 지구 65B 7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8길 20	2020-03-05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 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 을부여함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433-5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71-34	2020-03-05	예전지명인농서에위치 하여도로명을부여함.	2009-04-09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0 - 279호

2020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공시(예산) 공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예산)공시』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우리 구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3,808억원으로, 전년대비 6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89억원이며,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08억원입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3억원입니다.
 - 지방채는 없습니다.
- ◆ 우리 구의 2020년 예산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519억원) 보다 2,711억원이 적습니다.
 - 재정자립도는 26.67%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23.03%보다 3.64%p 높으며,
 - 재정자주도는 41.89%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34.50%보다 7.39%p 높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예산규모는 작지만,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재정운영의 자립정도가 높아 비교적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정보공개>재정(예산)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홍보실 신호은(052-241-7115) 이메일 : she2011@korea.kr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28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주민소통실)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소하천명		이 화 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중산동 1200-15번지		
	면적	일시 9㎡, 영구 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영구(일시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목적 및 사유	인공구조물 설치 (방법용 CCTV)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287호

울산광역시 복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안 제2조)
 -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안 제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안 제4~9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간사, 관계기관 등의 협조

- 시행규칙 근거(안 제10조)

3.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963, 팩스 : 052)241-7969】

5. 기타사항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3. 기획홍보실장
4. 안전정보과장
5. 건설과장
7. 교통행정과장
8. 교통유관기관의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9. 그 밖에 주민대표 등 교통안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 포함)
-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란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경찰청

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105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289호

울산광역시 복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사용화와 인증기 확대보급으로 인하여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 명시 (안 제2조)
- 나.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명시 (안 제6조)
- 다.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보관 등 관련 규정 사항을 전부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과
- 전화번호 : 052)241-7526, 팩스번호 : 052)241-751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호

울산광역시 복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울산광역시 복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印影)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인증기와 통합민원발급기로 한정한다)

②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보건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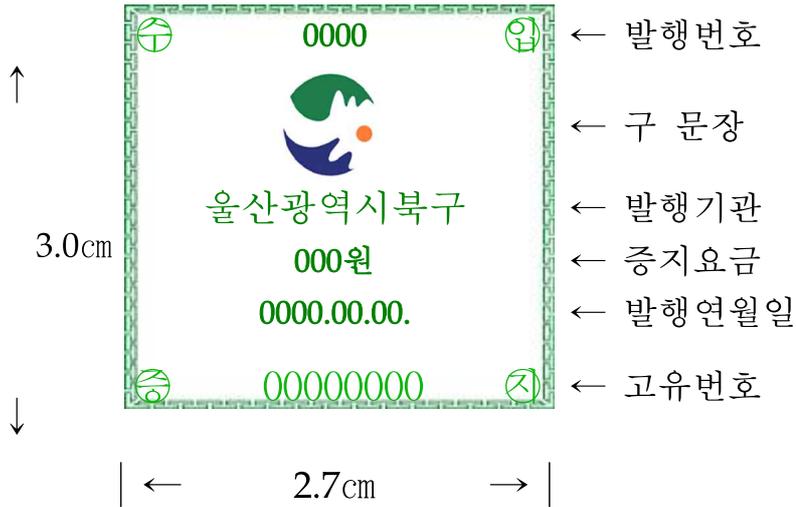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6조 관련)



※ 인영색깔: 녹색 및 흑색

※ 테두리는 아(亞)자 모양으로 한다.

[별지 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월/일	금일 까지 의 누계	전일 까지 의 누계	금일발행		금일결손		결제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담당	과장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0 - 297 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 환경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5.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명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0. 3. 5. ~ 2020. 3. 25.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연번	설치예정장소	비 고
1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이동식CCTV로 불법투기지역에 수시이동	이동식 5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환경미화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연암동)

○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052-241-78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2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1.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9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3)사업
 - 나. 명 칭: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소로1-13)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 (노선명)	규 모		비 고
		폭(m)	길이(m)	
도 로	소로1-13호선	6	15.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20년 3월 19일까지)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매곡동 신기마을 일원(소로1-13호선)도로개설』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